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35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이해식・신정훈・김성회

윤후덕 • 홍기원 • 박정현

황명선 · 김성환 · 황정아

정을호 · 정준호 · 염태영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자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.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.

한편, 현행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.

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,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 지 않으므로,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 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, 특 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 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(안 제 58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"을 "구분에 따른 금액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10만원"을 각각 "20만원(제2호의 경우 10만원)"으로, "제1호를"을 "각 호의 가목을"로, "손금"을 "필요경비"로 한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(이하 이 조에서 "특별재난지역"이라 한다)에 기부한 경우(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한다)
  - 가.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 의 100
  - 나.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20만원 × 1 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20만원) × 100분의 15
- 2. 제1호 외의 경우
  - 가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 의 100
  - 나.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

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원) × 100분의 15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.

#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 ① 거주자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사업 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 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, 10만원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
- 1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 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금 × 110분의 100
- 2.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) × 100분의

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
세액공제 등) ①
구분에 따른
<u>금액</u>
,
<u>20만원(제2호의 경우 1</u>
<u> 0만원)</u>
<u>각 호의 가목을</u> <u>20</u>
<u>만원(제2호의 경우 10만원)</u>

개

정

아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 체(이하 이 조에서 "특별재난 지역"이라 한다)에 기부한 경우(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

-----필요경비-----.

15

내에기부한경우로한정한다)

<u>가.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</u> <u>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</u> 금 × 110분의 100

나.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 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2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20만 원) × 100분의 15

2. 제1호 외의 경우

<u>가.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</u> <u>부한 경우: 고향사랑 기부</u> 금 × 110분의 100

나.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 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: 10만원 × 110분의 100 + (고향사랑 기부금 - 10만 원) × 100분의 15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② • ③ (생 략)